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67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이원택・이병진・임호선

최민희 • 윤준병 • 김승원

임미애 · 서삼석 · 주철현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소득세의 감면) ①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u>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양도함	028년 12월 31일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